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6. 2. 18(목) 평창군수(도시주택과장)
- 회부일자 : 2016. 04. 14(목)
- 상정일자 : 2016. 04. 27(수) 제21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 「경관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오정희)

- 본 조례안은 경관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제36조의2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경관위원회 설치) 군수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평창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